

원격교육연수 운영규정

- 전부개정 2011.05.13. 연수원규정 제66호
- 개정 2013.02.19. 연수원규정 제71호
- 개정 2015.04.28. 연수원규정 제78호
- 개정 2016.05.16. 연수원규정 제80호
- 개정 2019.12.30. 연수원규정 제9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와 동 시행규칙 제3조 및 제7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의3, 동법 시행령 제4조의 4, 제4조의5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원격교육연수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효과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연수교육과정 : 한 과정 전체가 인터넷 기반 및 인쇄매체·방송매체·텔레컨퍼런스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교과로 구성된 교육과정 <신설 2019.12.30.>
 2. 혼합연수교육과정 : 집합교육교과와 원격교육교과로 구성된 교육과정 <신설 2019.12.30.>
 3. 특별연수교육과정 : 연간 원격교육계획 외에 교육청 및 교육기관(정부기관 포함)의 요청으로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기간 등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원격연수 교육과정 <신설 2019.12.30.>
 4. 위탁연수교육과정 : 연간 원격교육계획 외에 교육청과 교직원의 요청으로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기간 등을 별도로 편성하여 외부 연수운영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원격연수교육과정 <신설 2019.12.30.>

제3조(연수교육계획) ① 원장은 전북교육연수원 연수 규정 제4조에 따라 원격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격연수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신설 2019.12.30.>

② 운영부장은 교육과정 및 교육 일정 등의 원격연수 교육계획을 전북교육

연수원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0.>

- 제4조(연수교육과정)** ① 원격연수 교육과정 및 연수 기간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② 삭제 <개정 2019.12.30.>
 - ③ 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연수시스템에서 연수 기간 종료 후 2년간 복습할 수 있다.
 - ④ 원격연수 교육과정은 학습 기간 및 학습 형태를 다양하게 개설·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30.>
 - ⑤ 원격연수 교육과정별 교육 인원은 과정 성격, 수강 신청 현황, 평가방법, 시스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2.30.>
 - ⑥ 혼합교육과정 담당자는 혼합교육과정에 포함된 원격교과목의 종류와 시간을 원격교육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9.12.30.>
 - ⑦ 원장은 연간 원격교육계획 외에 외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특별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30.>
 - ⑧ 외부기관이 개발하여 우리 월에 운영을 요청한 원격교육 콘텐츠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콘텐츠의 구성, 내용, 윤리성, 기타 요건 충족 사항 등에 대한 내용심사를 받아야 하며, 전문성을 가진 해당 본청 과에서 검토 후 공문으로 요청할 때, 개설·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5조(연수대상) 원격연수 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12.30.>

1.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자
 2. 제1호를 제외한 국·공·사립학교 교직원
 3.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① 연수대상은 원격연수를 희망하는 전라북도 내의 교직원 중 연수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회원가입, 수강 신청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된 자에 한한다. <개정 2019.12.30.>
- ② 교직원이 아닌 자는 관계기관의 요청과 원장의 승인하에 제1항의 절차에 의하여 수강 신청한 자에 한한다.
- ③ 집합 연수의 일부를 원격연수와 혼합연수 교육과정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과정 연수대상자로 지명된 자에 한한다.

제6조(연수방법) 원격연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행하되, 운영부장은 수강생들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0.>

- ① 원격연수는 중앙교육연수원의 통합교육연수시스템(이하 “연수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 ② <삭제 2019.12.30.>
- ③ 원활한 연수 진행을 위하여 운영 강사, 튜터 등의 전문인력을 배치, 운영할 수 있다.
- ④ 운영 강사 및 튜터 등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수강자의 학습 진도 확인 및 학습 독려
 2. 콘텐츠 및 운영시스템 상시 점검 및 오류 예방
 3. 콘텐츠 및 운영시스템에 대한 각종 질의응답(문자, 전화, 게시판, 원격 지원 등을 활용)
 4. 신규 콘텐츠 개발 지원
 5. 기타 연수 운영에 필요한 활동
- ⑤ 운영 강사 및 튜터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의 수당 지급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되, 수강 신청 인원, 학습 차시, 교육 방법, 교육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7조(수강신청) ① 원격연수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에 회원 등록 후 수강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원격연수 수강신청자는 수강 신청 기간이 같은 경우 동시에 5개 교육과정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9.12.30.>

③ 원격연수 수강신청자는 수강 신청 시 교원 연수지명 명부 폐지에 따라 연수지명 번호는 입력하지 않는다. <신설 2019.12.30.>

④ 원격연수 수강신청자는 수강 신청 시 근무 기관, 직급, 교육대상자 구분, NEIS 개인번호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부정확한 개인정보 입력으로 발생하는 이수증 발급 및 NEIS 인사기록 등재 오류 등 교육 이수 관련 불이익 등의 책임은 수강신청자 본인에게 있다.) <신설 2019.12.30.>

제8조(수강승인) ① 과정 운영 담당자는 교육목표, 수강 계획 인원 등을 고려하여 원격교육과정의 수강을 승인하여야 한다. 단, 수강 승인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자동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12.30.>

② 연수생 선정 결과는 별도의 통보 절차 없이 수강 승인으로 같음한다. <개정 2019.12.30.>

제9조(학습평가) ① 평가는 학습 목표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참여도평가, 온라인평가 및 기타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② 그 평가 영역과 배점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30.>

③ 평가는 참여도평가, 온라인평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9.12.30.>

1. 평가는 참여도평가와 온라인평가를 실시하되, 그 결과는 이수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만 삼는다. <개정 2019.12.30.>
2. 참여도평가는 연수시스템의 학습진도율을 말하며, 과정별 또는 과목별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3. 온라인평가는 연수시스템의 수료 평가를 말하며, 객관식 또는 주관식 단답형을 말한다.
4. 온라인평가는 총 3회 응시 가능하며, 응시 결과 중 고득점을 인정한다.(3회 응시 중 적어도 1회는 60점 이상 취득해야 하며, 3회 모두 60점 미만일 경우 미이수 처리된다.) <개정 2019.12.30.>

④ <삭제 2019.12.30.>

1. <삭제 2019.12.30.>
2. <삭제 2019.12.30.>
3. <삭제 2019.12.30.>

⑤ <삭제 2019.12.30.>

⑥ <삭제 2019.12.30.>

제10조(연수이수) ① 원격연수 교육과정의 이수는 과정별로 다음 각호를 모두 갖추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12.30.>

1. 평가 총점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 이상
2. 학습진도율 90% 이상

② 이수 기준은 [별표2]와 같으며, 절대기준평가로 『참여도평가(학습진도율)

환산점수가 63점 이상이고(AND), 온라인평가의 환산점수가 18점 이상』
으로 한다.(단, 학습진도율 90% 미만이거나 온라인평가 60% 미만은 미
이수 처리된다.) <개정 2019.12.30.>

③ 5차시 미만 과정의 경우 학습진도율(100%)만으로 수료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11(이수처리 및 NEIS전송) 원격연수 교육과정이 상시과정 운영됨에 따라
이수 처리와 NEIS 전송은 학습자 스스로 한다.(단 이수 기준을 충족한
학습자가 이수 처리 및 NEIS 전송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수 운영 기간
종료 후 시행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원 연수담당자가 일괄 이수 처리
및 NEIS 전송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0.>

제12조(연수인정시간) ① 원격연수 교육과정 수강 대상자의 직급에 따라 별
개의 지침이 적용되어 같은 원격연수 콘텐츠를 이수해도 인정 시간을
달리한다. <신설 2019.12.30.>

② 교육공무원(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포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인정한다.
<신설 2019.12.30.>

1.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직무연수
시간으로 인정한다.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시행규칙」 및 「원격교육연수원 운영 매뉴얼」
(교육부, KERIS)에 따라 1차시를 1시간으로 인정한다.
※ 1차시는 25분±5분을 기준으로 하되, 교수설계 및 방법 등을 고려
하여 1차시를 분절된 형태(모듈형태)로 구성이 가능하다.

③ 각급 학교 교직원(지방직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인정한다. <신설 2019.12.30.>

1.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및 「지방직공무원 교육
운영 운영지침」(행정안전부)에 의해 원격연수 콘텐츠의 러닝타임을 기
준으로 이수 시간을 인정한다.
2. 「공무원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교육 시간으로 인정한
다.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의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
(표준안)에 따라 2차시를 1시간¹⁾으로 산정(단, 1차시가 1시간으로 운

영되는 경우 1차시를 1시간으로 인정 가능)한다.

4. 지방직공무원은 1차시 0.5시간 인정²⁾(잔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5. 예외 사항으로 청렴 과정은 1차시 1시간 인정한다.
6. 교무·전산·과학·특수교육·행정실무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교육복
지사, 전문상담사, 사서, 돌봄전담사, 방과후 강사 등 교육공무원³⁾
은 별도의 지침이 없어, 지방직공무원 인정 시수에 따른다.

제13조(수강제한 등) ① 대리수강, 대리시험 등 비교육적인 행위로 교육질서
를 어지럽히거나 연수생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
수강을 취소하고 소속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알릴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② 원격교육과정(과목)의 특성, 학습효과 등을 고려하여 원격교육의 학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14조(위탁 연수) 연수 과정상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연수할
수 있다. <신설 2019.12.30.>

제15조(공동활용) 원격교육의 활성화 및 경제적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
시스템이나 콘텐츠 등을 다른 교육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공동활
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2.30.>

제16조(준용규정 등) ① 이 규정 이외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련 지침과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운영 규정 등의 관계 규정을 준용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②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30.>

1) 인사혁신처, '2018 이러닝 교육계획'에 따른 연수 콘텐츠별 인정 시간

2) 일반적으로 원격연수 콘텐츠 1차시는 25±5분으로 제작됨에 따라 지방직 공무원은 0.5시간 인정[현 시스템상 러닝타임
계측 불가]

3)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를 총칭(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채용 등에
관한 조례 2조)

부 칙 (2011.05.13. 전라북도교육연수원규정 제6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2.19. 전라북도교육연수원규정 제7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4.28. 전라북도교육연수원규정 제7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5.16. 전라북도교육연수원규정 제8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30. 전라북도교육연수원규정 제9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원격교육연수 평가영역·배점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만점	환산비율	환산점	평가기간
참여도평가	진도	학습진도율	100점	70%	70점	연수과정 종료일 23:59까지
온라인평가 (연수과정 별 상이)	온라인 시험	시험문제 10~20문항	100점	30%	30점	학습진도율 90% 이상 응시(제출) 가능
	과제 제출	과제 작성 후 제출				
계			200점	100%	100점	

[별표 2]

온라인평가 이수 기준

평가 구분	이수기준	환산점수	비고
참여도평가	90%	63점 이상	학습진도율을 의미함
형성평가	60%	18점 이상	15시간 미만은 생략 가능